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1426 제출연월일 : 2024. 7. .

제 출 자:대통령

주 문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이숙연)의 임명에 동의한다.

제안이유

대법관(3인)의 임기가 만료(2024. 8. 1.)됨에 따라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임명동의대상자

○ 성 명:이숙연(李叔妍)

○ 생년월일 : 1968년 8월 14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xx길 xx, xxx호

※ 붙 임

- 1.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 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 5.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 임명동의 요청대상자

성 명: 이숙연(李叔 姸)

생년월일 : 1968. 8. 14.

2. 임명동의 요청사유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간 전국 각지의 여러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오면서다방면에 걸친 출중한 법률지식과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여성 법관임.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늘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는 등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하여 소송관계인들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할 수 있는 법정 중심의 재판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논리정연하고 가독성 높은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경찰공무원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취객을 상대하던 중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과 41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나 평소 뇌동맥류라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망인의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밝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순직군경과 유족의 권리구제에 힘썼음.

-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재 판을 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이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이 판결은 긴급조치 자체의 불법 성으로 인하여 당시 국가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국 가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 정해 온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음.
-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속칭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자가 구속영장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게 되어 신원과 초상이 드러난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나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1심과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 판결은 헌법상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인권을 재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포토라인의 정당성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특허발명에 대한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특허발명이 복수의 과제해결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해결원리가 각각 출원 당시 공지되거나 공지된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과제해결원리의 결합 자체가 공지되거나 자명한 것이 아니고 특히 복수의 과제해결원리 중 일부만 공지되고 균등 여부가 다퉈지는 구성요소는 공지된 과제해결원리와 무관한 것이라면, 특허발명과 확인 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문제되는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의 비교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으로써 특허발명이 복수의 과제해결원리를 가지며 이 중 일부가 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균등침해 여부의 판단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 장전담판사를 맡아 형사법관들과 수사기관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두루 반 영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하는 별지의 틀을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겸임교수로 활동할 정도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음. 과거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 시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 약하고 사건관리 및 통계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법관업무포털 개발 업 무를 총괄하여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며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도 기여해 왔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다방면으로 탁월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안목과 통찰력,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합니다.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ㅇ 재직증명서
- ㅇ 졸업증명서
- ㅇ 합격증명서
- ㅇ 경력증명서

이 력 서

성 명:이숙연(李叔妍)

생년월일: 1968. 8. 14.

직 업

2022. 2. ~ 현재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학력

1984. 3. ~ 1987. 2.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졸업

1987. 3. ~ 1991. 2.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공학사)

1993. 3. ~ 1995.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95. 3. ~ 1998.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2007. 9. ~ 2011. 2.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정보경영공학과 졸업(박사)

2016. 3. ~ 2018.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박사)

경 력

- 1994.10.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2. ~ 1999. 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9. 3. ~ 2001. 2.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 2. ~ 2004. 2.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04. 2. ~ 2008.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4. 8. ~ 2005. 6.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노스웨스턴대학)
- 2006. 2. ~ 2006.1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겸임)
- 2007. 1. ~ 2008. 2.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겸임)
- 2008. 2. ~ 2010. 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 2. ~ 20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 2. ~ 2017. 2.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 2017. 2. ~ 2018.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 2018. 2. ~ 2020. 2.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 2020. 2. ~ 2021. 2. 광주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 2020. 2. ~ 2021.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 2021. 2. ~ 2022. 2.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 2022. 2. ~ 현재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병역

○ 해당사항 없음(여성)

상 훈

○ 해당사항 없음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ㅇ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ㅇ 병적증명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ㅇ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ㅇ 공직후보자 최초재산신고서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 o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o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서
-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ㅇ 납세(체납)증명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ㅇ 범죄경력조회서

재산관련 부속서류